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67 발의연월일: 2021. 12. 17.

발 의 자:노웅래・김주영・송옥주

신정훈 • 양기대 • 양이원영

윤준병 · 이해식 · 최인호

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대기·폐수 등을 환경오염물질을 대규모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관리의 일환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으며, 일명 굴뚝산업으로 분류된 폐기물 소각장, 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업종 대부분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음.

통합관리대상에 포함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학적 배출영향 분석을 통해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고, 5년마다 허가배출기준 을 재검토하는 등 환경기술 발전상황을 지속적으로 사업장 관리에 투 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멘트소성로가 통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영향이 크지만 통합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멘트 제조업 등을 통합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2년 이후에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 대상 업종별 적용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6조제1항 후단).

법률 제 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업종은"을 "업종별 적용시기는"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	제6조(통합허가) ①
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	
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	
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	
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u>.</u>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업종</u>	<u>업종</u>
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	<u>별 적용시기는</u>
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	
을 고려하여 <u>2021년 12월 31일</u>	<u>2026년 12월 31일까</u>
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u>지</u>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